

예산총칙

2021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2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21,184,572	15,635,537
일반회계	490,867,832	14,726,035
특별회계	30,316,740	909,502
기타특별회계	30,316,740	909,502
옥정호상수원관리특별회계	1,514,688	45,441
섬진강댐특별회계	1,882,834	56,485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558,439	16,753
농어촌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	1,728,511	51,855
상수도사업특별회계	23,622,289	708,669
하수도사업특별회계	1,009,979	30,299

제 2 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「세입 세출 예산」과 같다

제 3 조 2021년도 채무부담행위는 「해당없음」으로 한다

제 4 조 2021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「26,500,000천원」으로 한다

제 5 조 202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「1,594,245천원」과 같다

제 6 조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「명시이월 사업조서」와 같다

제 7 조 2021년도 계속비사업은 「계속비 사업조서」와 같다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

제 9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간주한다.